

2024년 3분기 칠산서부동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수강생 모집

칠산서부동 주민자치센터 2024년 3분기 교양강좌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4. 6. 17.

칠산서부동 주민자치회장

1 모집 개요

- 강좌기간 : 2024. 7. 1. ~ 9. 30.(3개월)
- 모집기간 : 2024. 6. 24.(월) ~ 6. 28.(금)
- 신청방법 : 본인 방문 접수(※헬스 제외)
- 신청장소 : 칠산서부동 행정복지센터 1층 총무팀
- 강좌문의 : 칠산서부동 총무팀(☎359-1834)

2 교양강좌

강좌명	시간	장소	수강료(원)	정원(명)	비고
노래교실	월 10:00~12:00	취미교실1,2	30,000원/분기	20	개인별 준비물 지참
서예	수 10:00~12:00	취미교실3	30,000원/분기	20	개인별 필기구&문방사우(붓, 베틀, 먹, 화선지) 지참
서양화	목 10:00~12:00	취미교실1,2	30,000원/분기	15	개인별 재료비 부담
라인댄스 (중급)	금 10:00~12:00	대회의실	30,000원/분기	20	개인별 준비물 지참
라인댄스 (초급)	금 14:00~16:00	대회의실	30,000원/분기	20	개인별 준비물 지참
볼룸댄스 (초급)	목 12:50~14:30	취미교실1,2	30,000원/분기	15	개인별 준비물 지참
볼룸댄스 (중급)	목 14:30~16:10	취미교실1,2	30,000원/분기	30	개인별 준비물 지참
요가	금 17:00~19:00	대회의실	30,000원/분기	20	개인 매트 지참
통기타	수 14:00~16:00	취미교실3	30,000원/분기	20	개인 악기 지참
영어*	목 10:00~12:00	취미교실3	30,000원/분기	20	개인별 준비물 지참
탁구*	월~목 13:00~16:00	대회의실	30,000원/분기	20	개인별 도구 지참
헬스	월~금 09:00~21:00	체력단련실	60,000원/분기	120	개인 실내 운동화 지참
풍물단	수 19:00~21:00	생활문화평생 학습관(풍유동)	30,000원/분기	20	개인별 준비물 지참
캘리그래피	수 10:00~12:00	취미교실1,2	30,000원/분기	20	개인별 준비물 지참
인문학 한자	월 14:00~16:00	취미교실3	30,000원/분기	20	개인별 준비물 지참

3 감면대상

- 1인당 1개 강좌에 한하여 감면
- 감면내용
 - [100% 감면]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- [50% 감면]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
4 유의사항

- 수강접수 후, 신청인원이 정원의 50%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.
- 수강료는 수강자(본인) 명의로 계좌이체 또는 방문 납부(현금)하여야 하며, 강좌개설 이후 2주 이내 수강료 미납 시 수강 취소 처리됩니다.
- 접수 시 결원이 생기면 대기자 순으로 충원합니다.
(※ 개강 전 취소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기자로 충원되며, 개강 후에는 충원되지 않습니다.)
- 교양강좌 프로그램 참여시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(행정복지센터)에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니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모든 개인물품은 보관이 불가하며, 자치센터 내 분실 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. 또한, 개인비품을 가져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 폐기처분 합니다.
- 강좌별 재료비와 교재비는 별도이며, 강사에게 직접 납부합니다.
- 교양강좌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결정에 따르며, 주민자치센터(행정복지센터) 여건에 따라 변경(폐강 포함)될 수 있습니다.
- 개강 안내는 6. 30.(일)까지 문자로 개별 통지 드립니다.
- 수강료 환불은 「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10조 제6항에 따라 수강료 환불 신청서[별지 제15호서식]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처리됩니다.

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환불기준

구 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폐강 또는 강좌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		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
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	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수업시작 전	납부한 수강료 전액
		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	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
		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	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
	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	반환하지 아니함	
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수업시작 전	납부한 수강료 전액	
	수업시작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(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	
비 고		총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	

칠산서부동주민자치회